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2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백승아 · 박해철 · 서미화

민병덕・박지혜・김 윤

한창민 · 용혜인 · 조계원

김성환ㆍ허 영ㆍ정혜경

황정아 • 민형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 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 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 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 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 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0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 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중 "제76조는"을 "제65조 및 제84조는 교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
계) ① ~ ④ (생 략)	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	⑤
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	
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	
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	
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	
에게, 같은 법 <u>제76조는</u> 교원	제65조 및 제84조
(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는 교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